# 【 17 】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○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관장기관의 조례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·공제등의 가입규정근거(안 제1조)
나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다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추가(안 제3조 내지 제6조)

양주시조례 제 호

#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인감업무담당공무원"을 "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조중 "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"를 "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"로 하고, "인감업무담당공무원"을 "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"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중 "이 조례에서"를 삭제하고,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이라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 내지 제6조중 "인감업무담당공무원"을 "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|
|---|---|
|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| 양주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-----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----------. |
| 제2조(정의) <신설> | 제2조(정의) ①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이라 함은 주민등록의신고(변경신고포함) 업무, 주민등록증발급 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등·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 |
| 이 조례에서 "인감업무담당공무원" 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업무, 인감증명발급 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 | ②(현행 본문과 같음) |
| 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br>② (생략) | 제3조(보험의 가입) ①-----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----------.<br>② (현행과 같음) |

| 현 행 | 개 정 |
| --- | --- |
| 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 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| 제4조(보험료의 지급) ----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-------. |
| 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br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하게 할 수 있다. | 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<br>①---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----------.<br>②----------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----------. |
| 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·보험금액·보험료·보험기간·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br>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| 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<br>①----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----------.<br>②----------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----------. |

#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장기관의 조례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의 가입규정근거(안 제1조)
나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다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추가(안 제3조 내지 제6조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별첨

□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요율서
(한국지방재정공제회)

1. 보험료의 책정

가. 적용범위

◦ 이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으로 인수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나. 요율의 개정

◦ 요율 또는 규정이 제정,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보험계약에 이를 적용하고 현재 보험기간 중도에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.

다. 보험계약의 단위

◦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1계약 단위로 한다.

라. 보험료의 표시

◦ 보험료의 표시는 매 계약당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다.

◦ 확정보험료의 표시는 백원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십원단위에서 절사한다.

마. 보험료의 산출기초

◦ 인감, 주민등록 등 해당업무 공무원수(단, 지자체별 전체 가입조건)

바. 적용보험료의 계산

◦ 적용보험료 = 기본보험료x보상한도액 인상계수x공무원수x조정계수 x특별할인 (2,424,550 =40,900x4.94x12)

◦ 기본보험료 ₩40,900(담당공무원 1인당)

◦ 조정계수(할인·할증율)

-자치단체별로 과거의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(13%-40%) 할증율(5%-100%)

◦ 특별할인 : 5%-15%

사. 보상한도액 인상계수(1인당)

◦ 1인기준으로 1청구당한도와 연간 총보상한도로 구분되며 1청구당 5천만원-3억원, 연간총한도를 1억원-15억원까지 설정

<보상한도액 인상계수>

| 구분 | | 1청구당 보상한도액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50 | 100 | 200 | 300 |
| 연간총보상한도액 | 100 | 1.00 | 1.87 | | |
| | 200 | 1.14 | 2.07 | 3.52 | |
| | 300 | 1.25 | 2.27 | 3.81 | 4.94 |
| | 400 | | 2.46 | 4.08 | 5.15 |
| | 500 | | 2.64 | 4.33 | 5.34 |
| | 750 | | | 4.56 | 5.50 |
| | 1,000 | | | 4.77 | 5.63 |
| | 1,500 | | | | 5.73 |

제18조 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<개정 2001.1.26>)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이나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7, 1999.5.24, 2004.3.22>

| 현 행 | 개 정 |
|---|---|
| 第18條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내고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신청할 수 있다. | 第18條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----------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이나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 ---------- |

#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

제정 2003. 10. 19 조례 제5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인감업무담당공무원"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·보험금액·보험료·보험기간·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